

한방 칼럼

# 탈모 이야기 1

탈모는 비정상적으로 머리털이 많이 빠져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 머리 숱이 적어지거나, 부분적으로 많이 빠져 대머리가 되는 것을 말하며 탈모로 인하여 야기되는 상태를 탈모증이라 한다

탈모는 원인에 따라 완전히 다른 치료법을 사용하므로, 제대로 원인을 분석한 후 치료를 해야만 한다. 탈모의 원인은 땅이 건조해서 생기는 탈모도 있지만, 과도하게 습해서 뿌리째 뽑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손바닥, 발바닥, 입술, 생식기 등을 제외한 사람의 몸에는 약 1백만 가닥의 털이 있다. 그 중 머리카락은 가장 많은 숫자와 진한 색깔을 자랑한다. 유럽인이 약 8만 가닥, 동양인이 약 10만 가닥을 갖고 있는 머리카락은 최고 1.5~2m까지 자랄 만큼 놀라운 성장력을 갖고 있다.

사람에게 우아함을 선사하는 반면 과도한 탈모와 이른 흰머리로 큰 심걱정을 안겨주기까지 하는 머리카락의 수는 사람에 따라 저마다 다르다. 숱이 적다고 하는 사람이 약 6~7만 가닥, 많다고 하는 사람이 13~14만 가닥 정도로 개인차가 크다. 빈도수는 cm<sup>2</sup> 당 약 500가닥 내외이며, 한 달에 1.3~2cm 가량 자라고, 남자보다 여자의 머리카락이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자란다. 특히 머리카락은 겨드랑이와 생식기 부위의 털이 최고 5~6cm, 눈썹·코털·귓속 솜털이 1cm 가량 자라는데 비해 최고 1.5~2m까지 자라며, 하루에 약 0.3~0.4mm, 1달에 약 1cm 정도 성장한다.

한 번 생겨난 머리카락은 성장기-퇴행기-휴지기의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머리카락의 약 90%가 성장기 모발로 5년

가량이 이 기간에 해당하며, 휴지기는 3개월, 퇴행기는 3주간의 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 단계를 거치는 동안 새로운 머리카락이 태어나고 오래된 머리카락은 빠져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하루 평균 30~100가닥의 머리카락이 빠지고 새로 생기기 때문에, 평소 50~60가닥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한 것처럼 새로 생기는 머리카락보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더 많으면 탈모증일 가능성이 높다. 탈모증은 일반적으로 하루 100가닥 이상 머리카락이 빠진 경우를 말한다.

탈뿌리에 해당하는 모근은 피부, 즉 두피 아래에 있으며 모낭과 맞닿아 있다. 아래 부위가 둥근 모양으로 부풀어 있는 모낭은 깊고 실같이 내려져서 머리카락의 형태를 갖추게 한다. 모낭과 닿아있는 모근은 멜라닌과 딱딱한 케라틴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만약 이곳에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지 못하면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하고 마는데, 흰머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열쇠를 모근이 쥐고 있는 셈이다. 또 머리카락의 밑뿌리는 중심부에 '모유두' 라는 것을 갖고 있다. 이곳으로 영양을 담당하는 신경, 혈관과 통하면서 머리카락의 성장을 이루게 하는데, 머리카락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큐베델 한의원 원장 최준용  
한의학 박사 LAc, Ph D  
TEL (213) 598-3047  
1210 S. Euclid St. #A  
La Habra, CA 90631



법률 칼럼

# 취업영주권 인터뷰 시 학생 신분 유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

취업영주권 인터뷰 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학생 신분 유지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 계속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에는 비이민 목적 (사업, 취업, 학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체류 신분은 비이민비자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은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단기 취업비자 (H1-B)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비자를 스폰서한 회사에서 일을 그만 두고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면 체류 신분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그 결과 서류 미비 즉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또 소액투자비자 (E-2)의 경우도 미국 내에서 E-2 사업장을 달고 비즈니스를 계속 하지 않았으면 체류 신분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그 결과 서류 미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비자 (F-1)의 경우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체류 신분을 어긴 것이고 그 결과 서류미비자가 됩니다.

취업영주권 인터뷰에서 체류 신분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이민관들은 항상 큰 이슈로 다룹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체류 신분 유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취업비자의 경우는 일한 회사에서 받은 paystub, W-2 그리고 세금보고서 등으로 간단히 증명이 가능하고 E-2의 경우도 business tax return 사업상인보이스 등으로 증명어렵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최근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학생비자의 체류 신분 유지 증명입니다. 과거에는 I-20 등을 통해서 간단히 학생 신분 유지를 점검했으나 최근의 경향은 실제로 영주권 신청인이 학교 수업에 참석했는지 그리고 생활비와 학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시에 출석한 학교와 관련된 성적표/졸업증/수료증/등록금 영수증/숙제/강의 계획서 등을 요

구하고 있으며 수강한 과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경향은 Full Time으로 학교에 출석했는지한 여부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민법상으로 Full Time학생만이 I-20를 받아 합법적 학생 신분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모자라는 학점을 등록한 경우 Full Time학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이민국은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비/생활비 조달 방법에 대한 것은 한국으로부터의 송금 기록 또는 본인이 미국에 올 때 가지고 온 자금에 대한 은행 기록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여기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취업영주권 인터뷰 시에 학생 신분 유지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의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성적표 2) 졸업장 3) 수료증 4) 등록금 영수증 5)숙제 6) 강의 계획서 7) 송금 기록.

이외에도 학교 수업에 출석했고 공부했었다는 증거면 어떤 것이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생활비와 학비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송금 기록 이외에 본인이 본국으로부터 학자금/생활비를 받은 루트에 대해서 친지의 자술서 그리고 출입국 기록 등으로 증명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 OC Office: (714) 522-5220  
6281 Beach Blvd, #300  
Buena Park, CA 90621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오렌지 카운티 전지역 전문업체



# 하시마 건축

## HASHIMA CONSTRUCTION INC

### 물, 화재, 천재지변 보험 크레임 및 수리, 리모델링 일체 통합 서비스

# Terry Joe (Mr. 조) 714.745.5958